

서울고등법원 2020. 4. 21 선고 2019재나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권용진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김용호, 홍임석

변론 종결 2020. 3. 26.

판결 선고 2020. 4. 21.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 8. 18. 선고 93가합3335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 31. 선고 94나40286 판결

주 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재심피고)와 피고(재심원고) 사이의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안양시만안구 B 전 1597㎡(다만, 재심대상판결에는 '2597㎡'로 기재되어 있다), C 답 3663㎡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5. 12. 3. 접수 제2809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5. 12. 29. 접수 제310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안양시 만안구 B 잡종지(2013. 15. 15.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등기가 되었다) 1597㎡, C 답(2013. 1. 15.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기가 되었다) 3663㎡(이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28099호로 "1975년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7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31069호로 "1975. 1. 5.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상의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1993년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93가합3335호)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994. 8.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94나40286)은 1996. 1.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피고의 상고를 대법원(96다11334)이 1996. 9. 24. 기각했다. 이와 같은 "1996. 9. 24.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증거] 다툼 없음,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존부와 재심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재심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E, F에 대한 각 유죄판결을 사실인정과 판단의 자료로 삼았지만, E, F이 재심절차에서 각 무죄판결을 받아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주장의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피고가 안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이라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 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등 참조).

2) 무죄판결별 독립된 재심사유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2018다300470 판결 참조).

3)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1) G동 농지분배

서울 구로구 H 답 416평 등 그 일대 전답 약 30만 평(이하 'G동 농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43년 사이에 강제 수용되어 국(일본국 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원래의 경작자가 계속 경작했다.

그러던 중 1950. 3. 10. 법률 제108호로 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G동 농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서 분배받은 농가는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원고에게 상환 곡 일부를 지급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1953년 5월경 G동 농지가 대한민국 육군 관리 국유지임을 주장한 이후부터는 원고는 더는 농가에서 상환 곡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1961년경 G동 농지에서 농민들을 쫓아낸 후 산업진흥(Ⅰ 공단 건설) 및 난민정착구제 사업으로 서울시로 하여금 G동 농지 중 일부에는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에는 Ⅰ 공단용지 등을 조성하게 했다.

2)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G등 농지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J가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2625호(이하 'J 청구 사건'이라 한다)로, E 등이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호 등(이하 'E 등 청구 사건'이라 한다)으로, 피고의 선친 D을 포함한 26인(이하 'D 등 26인'이라 한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호(이하 'D 등 청구 사건'이라 한다)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66. 1. 25. D 등 26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1966. 4. 8. J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1967. 2. 8. E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그 각 판결에 원고가 항소했다.

D 등 청구 사건의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66나527)은 1967. 1. 13. D 등의 변경된청구취지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이라한다)을 선고했다. J 청구 사건의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65나321)은 항소심 증인 F의 '농지일람표, 상환대장 등의 서류는 종전부터 비치되어 있었고, 농지소표만을 수복후 다시 만들었다'는 취지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1966. 4.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에 원고가 상고했지만, 원고의 상고를 대법원(67다361)이 1967. 5. 16. 기각했다.

D은 1975. 1. 5. 사망했다.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던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12. 3. "1975년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975. 12. 29. " 1975. 1. 5.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마쳤다.

3)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원고가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원고의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1968년 3월경부터 그 민사소송의 E 등 원고들과 증인 F 등에 대하여 수사하여, 민사소송을 취하하거나 민사확정판결 상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그렇게 하지않은 E 등 41인, F 등을 사기, 위증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1968년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이하 '제1차 재심의 소'라 한다)를 서울고등법원(68사21)에 제기했다.

위와 같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서울형사지방법원 68고42609, 69고13577, 69고29382,

70고27529, 70고30743(병합)]은 항소(서울고등법원 74노5135), 상고(대법원79도550)를 거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는 거듭되는 파기환송(서울고등법원 79노5560, 83노459, 83노6971) 후의 판결 등을 거쳐, 마침내 1984. 3. 13. 종료되었다. 그결과 피고인 12인에 대하여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났지만, F이 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70고23538)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70. 9. 18. 확정되었고, E 등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제1차 재심의 소의 수소법원이던 서울고등법원(68사21)은 1989. 12. 6. F, E에 대한 각 유죄확정판결의 내용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을 취소하며 고(故) D의 소송수계인 피고의 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차 재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990. 2. 9.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원고는 제1차 재심의 소를 통해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을 취소하는 제1차재심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에 근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원고는 1993년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93가합3335호)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제1차 재심판결의 이유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토지는 농지분배가 된 적이 없었으므로,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을 완료했음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1994. 8. 18. 제1차 재심판결의 내용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등을 선고했다. 피고 등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94나40286)은 1996. 1. 31.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등의 상고를 대법원(96다11334)이 1996. 9. 24. 기각했다.

5) F, E 등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확정

위 3)항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이미 사망한 피고인들의 유족 등 155인이

2006. 5. 26.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G동 농지분배를 둘러싼 형사재판과 관련한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신청했다. 이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에게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을 집단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하며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이에 F은 2012.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단25)에 서울형사지방법원 1970.9. 10. 선고 70고23538 판결에 대한 재심을, E은 2017.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단44)에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2. 18. 선고 68고42609 등 판결 중 E 부분에 대한 재심을 각각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2. 25. F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2018. 2. 20. E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각각 선고했고, 이 각 무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동 농지분배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 주요 소송의 경과 중 앞서 인정한 사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당해 소송 중심)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비고
원고 J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2625	1964. 12. 26.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65나321	1966. 4. 8.	증인 F의 증언
원고 D 등 26인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073	1966. 1. 25.	원고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66나527	1967. 1. 13.	변경된 청구 인용 판결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 제1차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67다361	1967. 5. 16.	상고 기각
원고 E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5470	1967. 2. 8.	원고 승소 판결
피고인 E	서울형사지방법원	68고42609 등	1974. 2. 18.	사기죄 유죄판결
피고인 F	서울형사지방법원	70고23538	1970. 9. 10.	위증죄 유죄판결
제1차 재심의 소	서울고등법원	68사21	1989. 12. 6.	제1차 재심판결
원고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93가합3335	1994. 8. 18.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 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서울고등법원	94나40286	1996. 1. 31.	항소 기각 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96다11334	1996. 9. 24.	상고 기각
F에 대한 재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단25	2016. 2. 25.	무죄판결 확정
E에 대한 재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단44	2018. 2. 20.	무죄판결 확정

6)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

피고는 2019. 10. 23. TV에서 "대법, 'G동 분배 농지는 국가 소유' 판결 '취소' 확정"이라는 자막뉴스 등 G동 농지분배 관련 판결의 언론 보도를 접했고, 2019. 11. 14. 위와 같은 언론 보도의 대상이었던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등을 열람했으며, 2019. 11.2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심사유 존부에 관하여

고(故)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을 대상으로 제1차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차 재심판결을 받았다. 제1차 재심판결에서는 F, E에 대한 각 유죄판결의 내용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을 취소하며 고(故) D의 소송수계인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이 위와 같이 제1차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지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75년 상환 완료"과 "1975. 1. 5. 협의불할에 의한 상속"이어서, 제1차 재심판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마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사실상 제1차 재심판결의 내용과 똑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제1차 재심판결의 내용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따라서 F, E에 대한 각 유죄판결은, 설령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F, E이 재심절차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의 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심의 소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재심의 소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를 살핀다. D은 G동 농지분배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이전등기판결을 받았지만, 그 무렵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른 농민과는 달리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고(故) D의 상속인인 피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G동 농지분배와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앞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10. 23.경 G동 농지분배관련 대법원판결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2019. 11. 14.경 F, E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인다.

그 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G동 농지분배 관련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했다거나 F, E이 재심절차에서 각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2019. 11. 20.부터 소급하여 늦어도 30일 이전에 F, E에 대한 각 무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설령 과거사정리위원회가 G동 농지분배와 관련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2008년경 알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피고는 F, E에 대한 각 무죄판결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날인 2019. 11. 14.경부터 30일(F, E에 대한 각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5년) 이내인 2019. 11. 20.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했다.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D에게 분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농지로 분배했고, 피고가 1975년경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을 완료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제1차 재심판결의 내용은 앞의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오, 판사 박성윤, 판사 이의영